

교원인사규정

- | | |
|--|---|
| <input type="checkbox"/> 제정 : 1987. 12. 1.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2. 6. 29.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1993. 3. 1.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3. 5. 15.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1994. 3. 1.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3. 10. 29.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1996. 9. 1.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4. 1. 21.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1997. 1. 1.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4. 7. 30.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1997. 9. 29.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5. 3. 20. |
| <input type="checkbox"/> 폐기 : 1999. 9. 30.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7. 8. 31.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1999. 10. 1.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8. 8. 31.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00. 3. 1.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9. 3. 1.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02. 9. 1.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9. 6. 18.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1. 6. 30. |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원인사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승급, 전보, 겸임, 보직임면, 휴직, 복직, 정직, 직위해제, 대기,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승진임용”이라 함은 하위직위에서 상위직위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간제재임용”이라 함은 현 임기가 만료된 후 동일 직위로 다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하위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원의 직위) 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제5조(임용기간) ①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임기만료 이전에 승진 임용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새로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1. 교수 : 정년까지
2. 부교수 : 6년
3. 조교수 : 3년

②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임용되는 교원은 연봉계약제로 임용하며 그 임용기간은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4-1-8 교원인사 규정

- ③ 외국인 교원의 임용기간은 임용계약에 의한다.
- ④ 제1항 제1호의 교수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⑤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임용시기) ① 신규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승진임용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행한다.
- ③ 기간제재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한다.
- ④ 승급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한다.

제7조(겸직금지) 교원은 타 기관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교원이 타 기관의 비상근직을 위촉 받은 경우 또는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제7조의2(파견근무) ①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교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흥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위한 경우
3.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학술진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
7.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협약대학과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3(파견 교원의 처우) ① 파견 교원에 대하여는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고 파견기관의 직무에 종사한다.

- ② 파견 기간 중이라도 교원 및 일반직원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급여를 전액 지급한다.
- ③ 파견 기간 중이라도 교수회의 출석, 의견진술 및 의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④ 파견 기간 중 교원업적평가는 면제한다.

제7조의4(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 다만 총장의 정년은 나이 제한을 두

지 아니한다.

제9조 -삭 제

제 2 장 신규임용

제10조(임용자격) 교원의 각 직위별 신규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조교수는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석사학위 소지자는 만2년, 학사학위 소지자는 만4년, 전문학사 소지자는 만7년 이상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에서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어야 한다.
2. 부교수는 박사학위,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각각 만 5년, 6년, 8년 이상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고 그 업적이 현저한 자. 다만, 교육경력은 최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 교수는 박사학위,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각각 만 7년, 10년, 12년 이상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고 그 업적이 현저한 자. 다만, 교육경력은 최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연구실적물의 제출) 신규임용 교원은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체능계 지원자는 최근 4년 이내 발표한 개인전시, 공연, 창작 및 실기활동의 창작자료, 팸플렛,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경력년수 계산)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동일한 기간 중 둘 이상의 기관에서의 연구 및 교육경력은 한 기관에서의 연구 또는 교육 경력만을 인정한다.
2. 경력 환산율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항목이 불분명 할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3. 경력을 환산하여 호봉확정 시 교수는 7년, 부교수는 4년, 조교수는 3년을 경력년수에서 각각 감산한다.

제13조(연구실적 심사기준) 연구실적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임용조건) ① 교원은 연봉계약제로 신규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연봉계약제에 관한 임용조건은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교원은 필요에 따라 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교원의 책임 강의시간은 주당 13시간으로 하고 보직교원의 책임 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제출서류) 교원임용대상자는 다음 서류를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4-1-8 교원인사 규정

제 출 서 류		비 고
1. 인사기록카드	1부	소정양식
2. 신원진술서	3부	소정양식
3. 서 약 서	1부	소정양식
4. 대학졸업 증명서	1부	
5. 석사학위 증명서	1부	
6. 박사학위 증명서	1부	다만, 외국대학박사의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위신고서 접수증으로 제출
7. 이 력 서	2부	소정양식
8. 연구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9. 기본증명서	2부	
10. 주민등록등본	6부	
11. 주민등록초본	2부	여자는 1부
12. 건강진단서	1부	
13. 논문(200%이상)	각 1부	
14. 연구실적조서	각 1부	소정양식
15. 연구실적 심사보고서	각 1부	소정양식

제16조(임용취소 및 변경) 교원 임용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조회결과 상이한 경우는 임용된 후에도 임용을 취소하거나 임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삭 제-

제 3 장 승진임용 및 승급

제18조(승진자격) ① 교원의 각 직위별 기본 승진임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최저근무년수	연 구 실 적
조 교 수 → 부교수	4 년	최근 4년 이내 300%이상
부 교 수 → 교 수	5 년	최근 5년 이내 400%이상

다만, 박사학위 미 소지자는 최저 근무 년수가 1년 연장된다.

② 제1항의 연구실적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연구실적물은 승진일 기준 최근 직급임용 시 제출한 논문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9조(승진원칙) ① 총장은 교원의 연구분위기 조성 및 능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본교 실정에 맞추어 교원의 직위별 승진인원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승진은 교원이 관계법령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복무의무를 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야 한다.

③ 승진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현 직위 임용 기간 중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평점 평균이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아야 한다.

구 분	교원업적평가 평점 평균
조 교 수 → 부교수	최근 4년 이내 80점 이상
부 교 수 → 교 수	최근 5년 이내 90점 이상

④ 현 직위 임용 기간 중 임용교과목과 연관이 있는 산업체 현장연수를 최소한 7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20조(승급) ① 승급은 10호봉까지는 1년에 1호봉씩, 11호봉부터 35호봉까지는 1년 6월에 1호봉씩 승급될 수 있다.

② 승급은 교원의 신규임용일 부터 1년이 경과된 3월 1일 또는 9월 1일에 행한다.

제21조(특별승진·승급) 본교 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현저한 자는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이나 승급을 할 수 있다.

제22조(승진·승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이나 승급이 되지 아니한다.

1. 징계처분 중에 있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교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교원
 - 가. 중징계 : 18월
 - 나. 경징계 : 6월
3. 현 임용기간 중의 업적이 교원업적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교원 (단, 정년퇴직 예정일 기준 잔여 임용기간이 2년 이내인 교원은 예외로 한다.)

제 4 장 기간제 재임용

제23조(기간제 재임용 대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기간제 재임용 대상이 된다.

제24조(연구실적물의 제출) ① 기간제재임용 교원은 최근 직급기간 내에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연구실적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봉계약제로 임용된 전임교원으로서 그 임용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의 기간제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은 100% 이상으로 한다.

③ 파견교원 및 정년퇴직 예정일 기준 잔여 임용기간이 2년 이내인 교원은 연구실적물의 제출을 면제한다.

4-1-8 교원인사 규정

④ 연구실적물의 인정은 <별표 2>에 의한다.

제24조의 1(산업체 현장연수 실시) 기간제재임용 교원은 교원의 자질향상과 산학연계를 위하여 재임용 기간 내에 임용교과목과 연관이 있는 산업체 현장연수를 최소한 7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25조(기간제 재임용 제외)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1. 현 임용기간중의 업적이 교원업적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단, 파견교원 및 정년퇴직 예정일 기준 잔여 임용기간이 2년 이내인 교원은 예외로 한다)
2. 휴직기간이 경과되거나 국외여행이 종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복직 또는 복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교육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교원으로서의 자세 또는 품위 등에 문제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교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하고 5년 이내에 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제26조(해임시기) 기간제재임용 대상자가 기간제재임용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는 당해 학기말에 자동 해임된다.

제 5 장 표 창

제27조(표창의 구분) 표창은 개인표창과 단체표창으로 구분한다.

제28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본교 개교기념일에 행한다.

제 6 장 징 계

제29조(징계사유)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법, 기타 교육관계 법령과 법인 및 본교의 제 규정, 지시 등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때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30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 : 파면, 해임, 정직
2. 경징계 : 감봉, 견책

-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⑤ 시말서, 경위서 등 징계관련 증빙자료의 내용이 제29조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총장이 별도로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징계보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 또는 요구된 사건이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때에는 동일 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복 무

제32조(복무)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인사기록

제33조(인사기록) 교원의 인사에 관한 일체의 기록, 관리는 교원인사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제34조(서류보관) 교원인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인사서류를 비치·보관한다.

1. 임용에 관한 서류
2. 표창에 관한 서류
3. 징계에 관한 서류
4.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5.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6. 기타 인사에 관한 서류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시에 재직중인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진 및 승급된 것으로 본다.
2. 전항의 기간은 그 임용, 승진 및 승급일자로부터 이를 계산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1-8 교원인사 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정관개정에 의거)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30일부로 폐기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시에 재직중인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승진 및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1-8 교원인사 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인 2016학년도 1학기 이후 처리된 교원책임수업시수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원의 경력 환산율 산출기준

번호	경 력 종 별	환산율
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력을 인정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 조교(무급조교 제외) 또는 전임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2.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3. 사관학교의 교관(교수부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4.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 포함)를 대학,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 5.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 6. 석사학위과정 이수자의 연구경력(학위 취득자)은 2년으로 인정 7. 박사학위과정 이수자의 연구경력(학위취득자)은 3년으로 인정 8. 박사학위과정 불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5년으로 인정 9.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 실무에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 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11. 공과계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12.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전문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13.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국영기업체 및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4. 변호사 및 계리사 개업 기관과 판사, 검사로 근무한 경력 15. 대학에서 외국어과를 전공한 자의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16.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의 전공한 분야를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7. 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18.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토지평가사, 변리사 개업기간 	100%

4-1-8 교원인사 규정

번호	경 력 종 별	환산율
1항	19.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대기업체, 중소기업체) 20. 공인된 체육단체(공익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교치 21.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인턴, 레지턴트, 전임간호사 근무경력 22.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교육부장관 인정기관 전문의사근무 경력 23.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원 개업기간 24.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대학 또한 전문대학 학교에 근무한 경력 25. 중·고등학교 교원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학과목과 부합되는 경력 26.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전문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27. 신학대학 졸업자의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할 경력 28.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100%
2항	1.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성적이 현저히 우수한자) 2.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 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간부	70%
3항	1.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험(주당 5시간 이하 30%) (단, 주당 5시간 초과할 때에는 시간당 10%씩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한다.) □ 1-5시간 : 30% □ 6시간 : 40% □ 7시간 이상 : 50% 2. 1항~2항 제외 경력	30%-50% 30%

※ 이외의 경력인정 환산은 교육법전 “교수자격 인정심사 준칙”을 적용한다.

(별표 2)

연구실적 심사기준

□ 연구실적물의 범위

1. 논문은 대학 또는 교수자격 인정을 받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으로써의 체계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최소한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과학계(공학 및 보건·의료 포함) 및 예·체능계는 예외로 한다.
2.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일간지 및 교내 신문에 발표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연구실적물 인정

<내역>

- ㉠ 저서·역서(출판된 것에 한함)
- ㉡ 학회지
- ㉢ 논문집
- ㉣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논문
- ㉤ 학술적인 정기간행물
- ㉥ 예능계 연구발표, 전시, 입선 등
- ㉦ 사업참여(신학연컨소시엄사업, 정부공공기관 및 산업체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 ㉧ 특허 및 실용신안
- ㉨ 상위 자격증 취득(기술사 이상)
- ㉩ 연구과제 수탁

1. 저서 중 저자의 이론을 정리 체계화한 저서만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
2. 중·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인정하되 강의용 자료와 참고서 등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전문대학 이상 교재로서 새로이 편찬 정리한 교재는 연구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예·체능계 전공은 총장이 인정하는 실적조서와 등록자료로서 대체할 수 있다.
(공인기관의 확인서 등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5.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논문

4-1-8 교원인사 규정

- 가. 신규임용 전 취득은 신규임용시와 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최초 재임용시에 만 인정한다.
- 나. 임용기간 중 취득은 현직명에서 만 인정한다.
- 다. 무논문과정 석사학위 취득도 100% 인정한다.

6. 학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연구한 연구보고서도 논문으로 인정한다

□ 연구실적 심사 및 인정

- 1.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분야의 교원 3인으로 한다.
- 2. 심사위원 3인 중 1인은 타교 교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심사위원은 상위직 교원으로 하되 상위직이 없을 경우 동일직 교원으로 할 수 있다.
- 4. 연구실적 심사평점은 각 편 공히 “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평점은 수, 우, 미, 양, 가 5단계 방법으로 한다.)

5. 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

- 가. 1인 연구 : 100% 인정
- 나. 2인 공동연구 : 70% 인정
- 다. 3인 공동연구 : 50% 인정
- 라. 4인 이상 공동연구 : 30% 인정
- 마. 번역서는 저서의 50% 인정
- 바. 전공도서, 학회, 예체능전시, 발표수상 해당제도에 관한 연구결과는 심사를 생략한다.
- 사. 석사학위 취득논문 : 100% 인정
- 아. 박사학위 취득논문 : 200%인 정
- 자. 무논문과정 석사학위 취득 : 100% 인정

※ 다만, 석사 및 박사학위(취득자)논문을 2인(지도교수 포함) 공동명의로 게재한 때에도 학위 취득자 단독 논문으로 인정된다.

차.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 편찬한 1종 교과서

- 1인 편찬 : 100% 인정
- 2인 공동편찬 : 70% 인정
- 3인 공동편찬 : 50% 인정
- 4인 이상 공동편찬 : 30% 인정

카. 예·체능계 연구실적 : <별표 3>

예·체능계 연구실적

【1점: 100%】

분야별	연구업적	환산인정율
미 술 아	1. 국제전, 미술대전, 상공전 가. 입선 1회 나. 특선 1회 다. 국제전 출품 1회 라. 지역규모 공모전 □ 특선 이상 2회 □ 입선 4회	1점 2점 0.5점 1점 1점
	2. 공인된 개인전 가. 개인전 1회 나. 2인전 1회 다. 기획전 1회	1점 0.5점 0.5점
	3. 공인된 단체전의 회원전 및 공모전 가. 입선 1회 나. 특선 이상 1회	0.3점 1점
	4. 공인된 국내외 초대전 출품 1회	1점
	5. 심사위원 □ 국제전 심사위원 1회 □ 미술대전,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1회 □ 공인된 공모전 심사위원 1회 □ 시도 단위 미술전람회 심사위원 1회	1점 1점 0.5점 0.3점
음 악 아	1.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 독주회, 개인작곡발표회 1회	1점
	2. 국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및 전문연주단체에 의한 창작품 초연 1회	0.7점
	3. 인정된 발표회의 3중주 이상, 3중창 이상, 3인 이상 작품발표회, 단독연주회 및 반주 1회	0.5점
	4. 인정된 종합연주회 중주 및 반주 3회	0.3점
	5. 협주곡협연, 오페라주역 1회	1점
체 분 아	1.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연구 발표회 1회	1점
	2. 올림픽 경기 출전	1점
	3. 전국대회 입상 2회	1점
	4. 국제공인 심판자격 1회	1점
	5.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50시간	1점
창 실 활	1.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	1점
	2.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 2회	1점
	3. 학·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 분야의 훈장 1회	2점
	4. 공인된 장소 및 국내외에서 인정된 창작 발표	1점

다만, 연구실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종류만을 인정한다.

4-1-8 교원인사 규정

□ 연구실적 인정기관 및 편수

1. 한국과학원 박사과정 이수 중인 자로서 동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고 그 성적평점이 2/3 이상이며 한국과학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교원(조교수 이하)으로 신규임용할 경우 그 평점 및 추천을 연구실적 100%로 갈음할 수 있다.
2.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총장, 부총장, 학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를 교원으로 신규임용하거나, 대학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던 자를 퇴직시에 재직하였던 직급으로 다시 신규임용할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거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을 인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 교원 업적평정 반영

1. 전문대학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2. 직업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3. 산학협동(산업체현장문제,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연구
4. 학생생활지도, 취업지도에 관한 연구
5. 산업체에서 2개월 이상 연수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6. 교원연수기관의 10주 연수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7. 벤처기업 창업실적